

행정사무감사 중점확인 사항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2023. 6

아 현 동

2023년도 복지도시위원회 동 감사 중점확인 사항

(감사대상기간: 2020.1.1.~2023.4.30.)

연번	직위	성명	중 점 확 인 사 항	페이지
1	위원장	채우진	<u>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총괄</u>	
2	부위원장	이상원	2-1. 장애인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1
3	위원	권인순	3-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3
4	위원	김승수	4-1. 동 주민센터 단체현황 및 중복회원 현황 4-2. 기초연금 지급관리 -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4-3.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4-4.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8
5	위원	백남환	5-1.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12
6	위원	오욱자	6-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6-2. 노인일자리아사업 추진현황	14
7	위원	장정희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 바우처 등 7-2. 경로당 관리 현황	16
8	위원	차해영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18
9	위원	한선미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23

중점확인사항

(이상원 위원)

2-1.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급현황
- 복지카드, 고속도로할인카드, 자동차표지 교부 등

2-1. 장애인 등록 및 관리실태

○ 장애인등록 근거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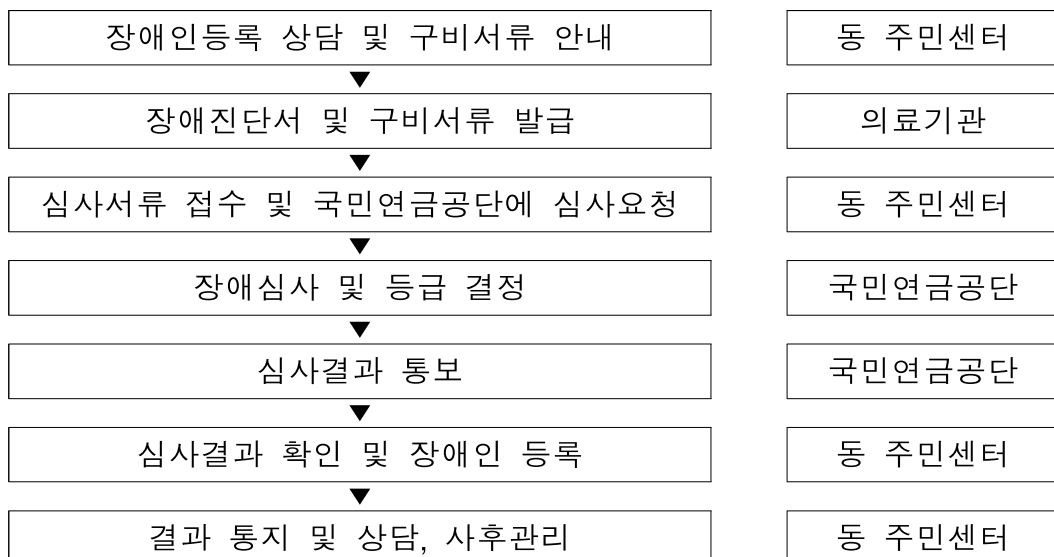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명)

합 계	지체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711	302	78	75	115	8	38	2
호흡기장애	간 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	2	1	8	3	34	23	19

- 등록대상: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으며, 전문의 진단결과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한 자
- 등록절차



■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구분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원자격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만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전 3~6급)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최소 40,000원 ~ 최대 403,180원	60,000원(시설 30,000원)

○ 지원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4.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장애인 연금	820	203,408	856	237,500	810	225,204	291	84,065
장애수당	910	36,400	920	36,800	964	38,560	324	19,440
장애아동 수당	24	4,200	17	2,600	23	3,910	8	1,360

■ 복지카드 및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할인카드 포함)

○ 발급대상

- 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통합복지카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 고속도로할인카드 기능 추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보호자 및 차량 1대에 한함

○ 발급현황

(단위: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4.
복지카드	74	54	63	28
통합복지카드	38	52	53	27

■ 자동차표지 교부

- 발급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의 주거를 같이 하며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발급현황

(단위: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4.
합계	46	39	41	19

○ 작성자 : 정민주(간호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중점확인사항

(권인순 위원)

3-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3-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및 실적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태

- 운영 추진체계

- 운영시작: 2015년 7월 ~
- 조직체계



- 인력운영 현황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복지상담전문관	마을사업담당
14	6	2	2	1

※ 중복 인력 포함

- 인력배치 현황

정원	행정지원팀		통합민원팀		주민복지팀	
	인력	업무	인력	업무	인력	업무
24	8	예산, 회계, 선거, 수방·제설, 청소, 환경, 운전, 주민자치혁신, 마을공동체조성, 우리동네주무관	7	통합민원	9	선별적 복지 (맞춤형급여, 차상위지원), 보편적 복지 (장애인, 노인, 아동, 영유아, 청소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동단위사례관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개발 및 서비스연계, 돌봄SOS센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우리동네주무관

※ 정원 외 방문간호사 2명 배치(주민복지팀)

- 주요사업 내용

과 제	구 분	업 무 내 용	
찾아가는 복지· 보편복지 실현	우리동네 주무관	- 구역전담 공무원의 “주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 집중 으로 주민관계망 형성 및 자원 연계 현장활동 (생활민원해결, 지역자원발굴)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	어르신	- 대상: 노령층 진입 65세 도래 어르신 - 내용: 보편적 복지건강 정보안내, 예방적 건강관리, 빈곤위기가구 발굴
		빈곤·돌봄 위기가구	- 대상: 기존 복지대상자, 은둔형 취약계층 주민 - 내용: 빈곤·돌봄위기가구 체계적 방문관리, 예방복지 서비스 실현, 가구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출산·양육 가정	-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 내용: 출산축하, 복지 및 보육서비스, 지역사회 정보제공
통합 서비스 제공	복지상담 전문관	- 내방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상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타 기관 서비스 필요시 해당 기관 담당자 연계	
	동단위 사례관리	- 동 단위에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여 문제해결에의 주도적인 지원체계 구축 - 동주민센터, 민간기관, 구 희망복지팀 협업 추진	
복지 생태계 구축	동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활성화	- 복지소외계층의 상시 발굴 및 이웃이 이웃을 돕는 동 단위 복지 기능 및 인적 안전망 구축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동 특화사업 추진	
	주민관계망 활성화	- 취약계층 주민의 주민관계망 강화 - 인적·물적 복지자원, 서비스 발굴 및 연계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실적

- 찾아가는 복지·보편복지 추진실적
- 어르신 복지플래너

추진기간	상답률(%)	대상자 수(명)	상답자 수(명)	서비스연계(건)
2023.4.	67.4	126	85	69
2022	78.4	390	306	204
2021	84.2	203	171	80
2020	92.6	231	214	214

※ 서비스연계: 기초연금, 교통카드 신청등록, 방문보건서비스 연계 등

- 빈곤위기가정 복지플래너

추진기간	추진율(%)	모니터링계획(건)	모니터링실적(건)	서비스연계(건)
2023.4.	169	838	1,419	618
2022	107	1,422	1,522	1,352
2021	114	1,943	2,222	1,224
2020	107	2,401	2,575	3,268

※ 서비스연계: 사례관리 연계, 후원물품 연계 등

- 우리아이 복지플래너

추진기간	상답률(%)	출생신고 인원수(명)	상답가구	서비스연계(건)
2023.4.	100	78	78	123
2022	100	211	211	341
2021	100	307	307	412
2020	100	269	269	534

※ 서비스연계: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 다둥이카드, 다자녀감면 등

- 통합서비스 제공 추진실적

- 복지상담전문관

추진기간	복지상담건수(건)	긴급지원 등 연계내역
2023.4.	1,201	18건/ 22,314천원
2022	4,426	51건/ 52,323천원
2021	6,045	83건/ 47,589천원
2020	5,017	170건/ 82,324천원

·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기간	사례회의(건)			사례관리(건)			
	소계	내부회의	통합회의	소계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3.4.	17	17	-	10	3	3	4
2022	40	36	4	36	16	14	6
2021	34	28	6	26	14	9	3
2020	36	33	3	21	10	7	4

- 복지생태계 구축 추진실적

추진기간	추진내역
2023.4.	- 동 협의체 특화사업 『든든한 버팀돌 아현이네』 추진(5월~): 총 208명 지원(4,799천원) · 저소득 노인·중장년1인가구/ 과일, 생신상, 기념일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고독사 예방사업 『이웃살피미』 추진(6월~): 참여자 15명 · 고독사 위험군 20가구/ 물품 전달 및 모니터링 활동/워크숍 총 3회 운영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2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440건) - 복지위기가구 발굴사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진: 총 11건 발굴
2022	- 동 협의체 특화사업 『든든한 버팀돌 아현이네』 추진: 총 226명 지원(4,595천원) · 저소득 노인·중장년1인가구/ 과일, 생신상, 영양식·건강프로그램 운영 - 동 협의체 특화사업 외 복지공동체 사업 추진: 총 2회, 115가구 지원 · 저소득노인 추석맞이 물품전달 및 식사 대접 행사 추진: 총 50명(800천원) · 저소득가구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후원품(국세트) 전달: 총 65가구 - 고독사 예방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이웃살피미』 추진: 참여자 15명 · 고독사 위험 55가구/ 김장김치 전달 및 안부확인 진행 · 워크숍·성과공유회 각 1회 운영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2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1,393건)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24명
2021	- 동 협의체 특화사업 『든든한 버팀돌 아현이네』 추진: 총 187명 지원(5,380천원) · 저소득가구 과일, 생신상, 맞춤형 현물 서비스, 집들이 선물 및 지역정보 제공 - 주민주도 동 협의체 활성화 『동복지대학』 2기 운영(21.9월 ~ 12월) · 동복지대학 기획(1회) 및 워크숍(3회) 진행, 졸업식/총 52명 참여 -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참여자 1명/취약계층 안부확인 활동(981건)
2020	- 동 협의체 특화사업 『든든한 버팀돌 아현이네』 추진: 총 254명 지원(5,307천원) · 저소득가구 제철과일, 생신상, 맞춤형 현물 서비스, 코로나 예방 물품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민 포상제도 『다가가는 아현동 인(人)』 추진: 총 5가구 발굴 - 주민주도 동 협의체 활성화 『동복지대학』 1기 운영(20.7월 ~ 12월) · 동복지대학 기획(2회) 및 교육(4회) 진행, 반찬나눔 및 수료식/총 288명 참여

○ 작성자 : 이정화(사회7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3-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태

- 최초구성일: 2016.5.18.
-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6조
- 조직체계: 공동위원장(공공, 민간) 2명, 위원 14명
- 구성현황

합계	공무원	복지기관 종사자	복지 통장	직능단체 위원	종교인	자영업자	기타 지역주민
16	1	2	2	7	1	1	2

- 협의체 역할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고독사 위험 가구 포함)
 - 복지대상자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사업 시행
- 운영실적

추진기간	회의·교육	특화사업 『든든한 버팀돌 아현이네』	
2023.4.	2회	추진기간	2023. 5월 ~ 2023. 12월(예정)
		추진내용 (3개사업)	- 저소득 노인·중장년1인가구 과일 지원/총 8회, 160명 -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잔치/총 8회, 8명 - 저소득 독거노인 기념일 추억 선물/총 4회, 40명
		소요예산	4,799,000원
2022	8회	추진기간	2022. 5월 ~ 2022. 12월
		추진내용 (3개사업)	- 저소득 독거노인 과일 지원/총 8회, 160명 -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잔치/총 8회, 8명 - 고시원 가구 영양식·건강 프로그램 지원/총 6회, 58명
		소요예산	4,595,080원
2021	11회	추진기간	2021. 5월 ~ 2021. 12월
		추진내용 (4개사업)	- 저소득 독거노인 과일 지원/총 7회, 140명 -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잔치/총 11회, 11명 - 저소득 가구 대상 맞춤형 현물 서비스 제공/총 6가구 - 산규전입 저소득가구 집들이 선물 및 지역정보 안내/총 30가구
		소요예산	5,380,500원
2020	7회	추진기간	2020. 5월 ~ 2020. 12월
		추진내용 (4개사업)	- 저소득 독거노인 과일 지원/총 8회, 128명 - 저소득 독거노인 생신잔치/총 8회, 8명 - 저소득 가구 맞춤형 현물 서비스 지원/총 6가구 - 저소득 코로나 취약계층 디지털 채운게 지원/총 112가구
		소요예산	5,307,240원

○ 작성자 : 조진실(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중점확인사항

(김승수 의원)

4-1. 동주민센터 단체현황 및 중복회원 현황

4-2. 기초연금 지급관리

- 지급기준 및 접수실태

-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4-3.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4-4.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

4-1. 동주민센터 단체현황 및 중복회원 현황

(단위:명,%)

연번	단체명	전체회원	중복회원(%)	비고
1	상생위원회	8	7 (88%)	
2	주민자치위원회	15	8 (53%)	고문 3명 (구의원)
3	통장협의회	26	10 (38%)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	11 (69%)	
5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9	3 (16%)	
6	새마을부녀회	14	10 (71%)	
7	새마을문고	10	4 (40%)	
8	자원봉사캠프	18	18 (100%)	
9	청소년지도협의회	15	8 (53%)	
10	교동협의회	8	1 (13%)	
11	바르게살기위원회	17	12 (71%)	
12	방위협의회	13	4 (31%)	
합 계		179	96 (54%)	

4-2. 기초연금 지급관리

○ 기초연금제도 개요

- 근거: 기초연금법
- 목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대상자: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2,020,000원) / 부부가구(3,232,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재산-공제액-부채)×4%/12개월]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공적연금, 재산소득 등
- 기본재산액 공제: 일반재산(대도시 1억3천5백만원), 금융재산(2천만원)

- 지급금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지급

- 노인단독 또는 노인부부 중 1인 수급: 최저 32,310원/ 최고 323,180원
- 노인부부 동시수급: 최저 각각 32,310원 / 최고 각각 258,540원(20%감액)

※ '23년부터 단독 가구 월 최대 323,180원, 부부 2인 가구 월 최대 517,080원 지급

○ 기초연금 신청 및 책정현황

(단위:명)

추진기간	65세 이상	신청자	책정자	책정제외
2023.4.	3,498	69	34	35
2022	3,306	175	127	48
2021	3,120	198	101	97
2020	2,858	168	90	78

○ 기초연금 지원현황

추진기간	대상자(가구/명)	지급건수(건)	지원금액(천원)
2023.4.	1,163/1,406	5,462	1,617,465
2022	1,104/1,324	14,900	4,186,012
2021	1,017/1,214	12,822	3,813,998
2020	990/1,183	13,514	3,490,554

※ 관내 전체 노인인구 (3,498명/'23.4.30.기준) 대비 기초연금 수급률 40.2%

4-3. 저소득주민(독거노인 포함) 방문행정

- 방문행정(모니터링) 추진체계(동주민센터)
 - 개별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계획수립(행복e음, 모니터주기 등)
 - 대상자 모니터 상담후 행복e음 상담결과 등록
- 대상가구 현황: 총 509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위기도 분류표

구분	위기도	주기	내 용
고립 위 기 단 계 (상시안부확인)		주 2회	- 고립 위험군 중 ‘고·중·저위험’가구 ※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위기단계”로 관리 ※ 주 2회는 AI, 우돌단에 의한 안부확인 / 월 1회는 방문상담
고립 위험 군외 가구	1단계	월 1회	- 일상생활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조손가구등 개별서비스 연계 외에 상담,치료,생활관리 등 서비스 통한 기능회복 필요 가구 - 장애·노인·질병 1인가구 중 스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 2인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기본생활이 어려운 가구 - 통반장 등에 의해 위기상황으로 신고된 가구 등 - 정신건강 상의 어려움(우울 등)이 의심되며 주의가 필요한 가구
	2단계	분기 1회	- 외부 사회서비스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등)
	3단계	반기 1회	-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서비스 가구: 금품 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4단계	연 1회	- 공공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가구

○ 모니터링 대상자 현황 (단위:명)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509	421	75	13

○ 모니터링 추진실적 (단위:건)

계	2020	2021	2022	2023.4.
7,738	2,575	2,222	1,522	1,419

○ [독거노인] 모니터링 추진실적 (단위:명,건)

추진기간	인원	추진실적
2023.4.	203	460
2022	235	962
2021	251	1,325
2020	237	1,492

○ 작성자 : 박수현(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4-4. 75세 이상 독거노인 현황(2023. 4. 30.현재)

○ 7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단위:명)

연령	총계	75-84세	85-94세	95세 이상
인구수	1,247	940	290	17

○ 7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 현황

(단위:명)

연령	총계	75-84세	85-94세	95세 이상
인구수	360	249	105	6

※ 독거노인 비율: 28.8%

중점확인사항

(백남함 의원)

5-1. 돌봄SOS사업 운영 실적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5-1. 돌봄SOS사업 운영실적 (2019.7월부터 시행)

- 사업대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중장년 가구(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 지원대상: 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지원
 - ※ 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2호
- 사업내용: 독립적 일상생활에 수행이 어렵고 불가피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종류 (1인 연간 지원한도 금액: 1,600천원)

서비스명		내 용	서비스 한도 (연간)
일시재가서비스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60시간
일 상 편 의	식사지원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도시락 배달	30식
	동행지원	필수적인 외출활동 지원 (병원내원 동행 등)	12회
	주거편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보수 지원 (방충망, 안전 바 설치 등)	재료비 15만원
	단기시설	당사자의 단기간 시설 입소	14일

※ 일시재가서비스, 동행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이용 시 교통비 연 12만원까지 지원

○ 운영실적

(단위:가구,건)

추진기간	지원가구(중복제외)				서비스유형					
	소계	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일반 가구	소계	일시재가	단기시설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편의
2023.4	77	70	6	1	84	13	-	16	26	29
2022	172	152	17	3	172	17	-	64	53	38
2021	83	79	3	1	116	19	-	74	6	17
2020	96	92	3	1	116	17	-	84	5	10

○ 작성자 : 정민주(간호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5-2. 긴급복지 지원실태

- 지원근거: 긴급복지 지원법
- 지원대상: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이하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산기준: 2억4천1백만원 이하
- 금융기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단, 청약저축, 보장성보험은 공제 가능)
- 위기상황: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26호,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이혼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 급여별 지원기준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주거비		398,000		662,500		874,100	
의료비		300만원 한도(단, 본인부담금 상한액 있음. / 비급여 일부 항목 제외)					
시설 지원비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비		초등학생	127,900	중학생	180,000	고등학생	214,000
연료비	110,000	해산비	700,000	장제비	800,000	전기	500,000 이내

○ 긴급복지 지원현황

(단위:건,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4.
신청건수	120	65	37	10
지원금액	65,235,000	40,288,000	47,885,000	19,079,000

○ 작성자 : 박주희(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중점확인사항

(오육자 위원)

6-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6-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6-1. 자활근로사업 운영실태

- 관련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제15조 및 시행령 제20조, 제25조, 제26조
- 사업목적: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 빈곤지원과 자활 사업을 통해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기능습득 및 근로기회 제공
- 참여대상: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 자활근로사업 유형

구 분			실시기관
고용노동부자활사업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자활 근로	Gateway과정	마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기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동주민센터

- 사업유형별 근로기준 및 내용

(단위:천 원)

구분	대상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월평균 근로일수	주5일 (1일8시간)		주5일 (1일5시간)
근로 임금 (월기준 표준소득)	지급액	61,690	54,000	31,670
	단가	57,690	50,000	27,670
	실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	1,499,940	1,300,000	719,420
내용		간병, 교육보조원, 청소, 요식업 등		환경정비

- 동 주민센터 자활근로 추진실적

(단위:명,천 원)

구분	참여대상자 현황		지급액
	근로유지형	도우미형	
2023.4.	1	1	1,591
2022	2	1	26,071
2021	2	1	24,167
2020	1	1	11,918

○ 작성자 : 박수현(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6-2. 노인일자리 및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절차: 운영계획(구, 동) → 접수(동) → 활동관리(동)
- 내용

사업명	거리환경지킴이	마을노노케어
유 형	공익활동형	
대 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선 발	소득인정액,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을 토대로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의거 선정	
내 용	뒷골목청소, 무단투기 제도, 홍보 등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경증치매노인 등 취약노인의 안부확인 말벗, 생활상대 점검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등 참여자 제외

○ 추진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4.
사업기간	2020.1.6. ~11.30.	2021.1.11. ~11.30.	2022.1.10. ~12.9.	2023.1.9. ~12.8.
활 동 비	만근 시 월 27만원			
사업유형	거리환경지킴이, 마을노노케어	거리환경지킴이, 마을노노케어 (마을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
활동시간	월 30시간(일 3시간, 월 10회) *혹서기는 근무시간대 조정			
배정인원	38명 (거리환경 32명/ 노노케어 6명)	35명 (거리환경 29명/ 노노케어 6명)	37명 (거리환경37명)	37명 (거리환경37명)

※ 2021.6월부터 ‘마을노노케어’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마을환경지킴이’로 전환되었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22년부터 사업 운영 중지됨

- 근무 현황

- 근무일은 날씨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안전교육 5시간 이상(필수)을 포함하여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
- 거리환경지킴이는 팀장 4명 선임하여 청소구역별 안전 및 관리 역할

※ 안전사고 발생, 참여어르신 변동,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구청에 보고

○ 작성자 : 송병운(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중점확인사항

(장정희 위원)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임대주택, 집수리사업, 주택바우처 등

7-2. 경로당 관리 현황

7-1. 주거복지 추진실태

○ 사업개요

구분		대 상	내 용
주택 지원	전세 임대	-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저소득가구 대상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임대		사업시행자(LH,SH)가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시중전세가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 임대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수시 임대		고시원, 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또는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 긴급지원 가구에 즉시 지원하는 전세 및 매입임대
집수리 지 원	희망의 집수리	저소득가구	도배, 장판, 방수,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 지원
	에너지 효율개선	저소득가구	단열·창호 지원,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보급
주거비 지 원	주 택 바우처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월세 일부 지급 (1인가구 8만원, 2인가구 8만5천원 지급)

○ 추진실적

추진 기간	주택 지원(신청/선정 건수)					집수리 지원(건)		주택바우처 (가구/천원)
	총계	전세	매입	영구	수시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개선	
2023.4.	4/미정	1/미정	3/미정	-	-	-	1	4/500
2022	39/8	6/0	21/6	12/2	-	1	9	27/2,340
2021	37/7	5/0	4/4	26/1	2/2	3	12	49/4,035
2020	40/13	6/3	-	28/4	6/6	4	12	78/5,940

※2020년도 매입임대주택 모집 안함 / 2023년도 전세·매입 임대주택은 심사중으로 결과 미정

○ 작성자 : 박해라(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7-2. 경로당 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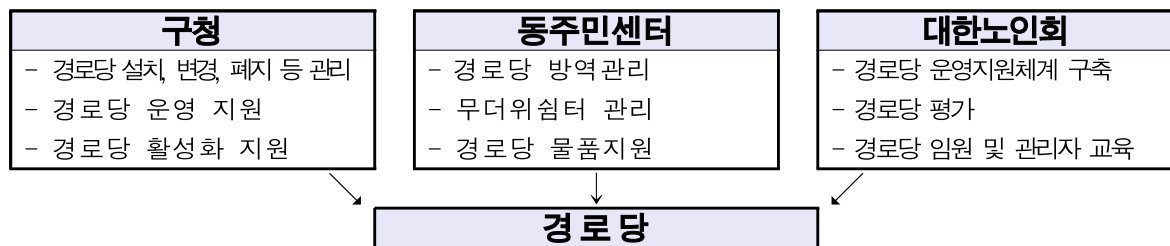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47조(비용의 보조)
- 사업목적: 노인의 여가선용과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 및 사회 참여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이용을 독려
- 참여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경로당 현황

구분	경로당명	주소	등록 회원수	방문인원 (평균)	중식(※)	프로그램 운영(※)	면적
1	공덕현대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	26명	5명	×	○	89㎡
2	마포현대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11길 84	24명	3명	×	○	64㎡
3	공덕삼성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 115-8	30명	8명	△	○	148㎡
4	공덕삼성제2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 115-8	25명	8명	△	○	81㎡
5	공덕삼성제3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7길 22	28명	6명	○	×	85㎡
6	공덕삼성제4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11길 50	22명	5명	×	×	119㎡
7	공덕삼성제5경로당 A블럭	마포구 마포대로 173-15	23명	10명	○	○	120㎡
8	공덕삼성제5경로당 B블럭	마포구 마포대로 167	31명	10명	○	○	157㎡
9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195	26명	10명	△	○	104㎡
10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195	24명	15명	○	×	161㎡
11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195	25명	8명	○	×	159㎡
12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단지 경로당	마포구 마포대로195	37명	15명	○	×	173㎡

※ 중식: ○(일주일 3번 이상), △(한달에 4번 정도), ×(식사 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프로그램(노래, 체조), 건강체조, 건강지압교실 등(수행기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아현살버복지관)

○ 경로당 관리체계



○ 동주민센터 경로당 운영실적

구분	2020	2021	2022	2023.4.
경로당 방역관리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른 휴관조치로 점검 미실시	·방역관리 실태점검	·방역관리 실태점검	·방역물품 필요 경로당 지원(소독제)
무더위쉼터 관리	·코로나19 확산우려에 따른 휴관조치로 점검 미실시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무더위쉼터 현장점검 ·부채 350개 배부 ·구급함 12개 배부	·무더위쉼터 운영기간 미도래
경로당 물품지원	·마스크 3,020개 배부 ·손세정제 180개 배부 ·소독제 24개 배부	·마스크 8,112개 배부 ·소독제 24개 배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1,380개 배부	·후원품(과자)48박스 배부

○ 작성자 : 송병운(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중점확인사항

(차해영 위원)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8-1. 보육료,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신청·지급현황

■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지급현황

□ 사업개요

- 근거: 부모급여 및 보육료 선정기준 지침
- 지원금액

사업명	대상자	0~11개월	12~23개월	24개월~ 86개월 미만	비고
부모급여	2022년 이후 출생자	70만원	35만원	1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차액 지급
양육수당	2022년 이전 출생자	20만원	15만원		가정에서 양육시 지급

- 보육료 지원 단가

(단위: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연령	정부지원단가	비고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만0세	514,000	바우처 지급
		만1세	452,000	
		만2세	375,000	
		만3-5세	280,000	

□ 추진실적

(단위:명)

추진기간	계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2023.4.	574	116	88	370
2022	716	156	-	560
2021	849	441	-	408
2020	795	427	-	368

○ 작성자 : 박주희(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 출산축하금 신청·지급 현황(2021.12. 사업폐지)

□ 사업개요

- 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지급대상: 2011. 1. 1. ~ 2021. 12. 31. 이전 출생아
 - 부 또는 모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금액

대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지급액	1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추진 실적

(단위:건,원)

구분	2020	2021
신청건수	269	307
지원금액	70,700,000	56,800,000

■ 장애인 가정 출산축하금 신청·지급 현황

구분		지원대상 및 금액		비고
주체	사업명 및 예산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보건복지부	출산비용지원 (국비50:시비50)	100만원	-	부부 모두 장애인일 경우 1가지만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시비100)	-	100만원	
마포구	출산축하금 (구비100)	150만원	심한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00만원	마포구 6개월 이상 거주자

※ 중복지원 가능

□ 추진 실적

(단위:건,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4.
신청건수	1	1	2	-
지원금액	1,000,000	1,000,000	4,500,000	-

■ 첫만남이용권 신청·지급 현황

-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3항~제6항
-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추진 실적

(단위:건,원)

구분	2022	2023.4.
신청건수	211	78
지원금액	422,000,000	156,000,000

○ 작성자 : 박주희(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8-2.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

○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 모금현황

추진기간	구분	모금횟수 (건)	모금액(원)
2022.11.15. ~ 2023.2.14.	성금	28	21,282,040
	온누리상품권	2	6,400,000
	성품	17	29,094,440
소계		47	56,776,480
2021.11.15. ~ 2022.2.14.	성금	40	32,548,920
	온누리상품권	2	5,500,000
	성품 (가중치 50%적용)	28	13,627,155
소계		70	51,676,075
2020.11.16. ~ 2021.2.15.	성금	40	31,538,060
	온누리상품권	2	5,400,000
	성품 (가중치 50%적용)	40	19,564,300
소계		82	56,502,360
2019.11.20. ~ 2020.2.19.	성금	52	37,731,186
	온누리상품권 (가중치 50%적용)	1	1,200,000
	성품 (가중치 50%적용)	18	10,671,919
소계		71	49,603,105

○ 작성자 : 송병운(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 지원현황

추진기간	성금품	지원세대	지원금(환가액)(원)
2022.11.15. ~ 2023.2.14.	간편식	400	10,400,000
	김치	146	5,973,540
	기타(참치세트, 라면 등)	748	12,720,900
	온누리상품권	180	6,400,000
소계		1,474	35,494,440
2021.11.15. ~ 2022.2.14.	참치세트	800	8,400,000
	김치	106	2,771,700
	기타(이불, 잡곡 등)	458	2,455,455
	온누리상품권	150	5,500,000
소계		1,514	19,127,155
2020.11.16. ~ 2021.2.15.	백미	37	567,000
	김치	165	5,954,800
	기타(참치세트, 손소독제 등)	1,672	13,042,500
	온누리상품권	180	5,400,000
소계		2,054	24,964,300
2019.11.20. ~ 2020.2.19.	백미	126	2,124,700
	김치	220	2,909,219
	기타(참치세트, 라면 등)	850	5,638,000
	온누리상품권	80	1,200,000
소계		1,276	11,871,919

○ 연중 이웃돕기 지원 및 후원현황(따뜻한겨울나기 기간 및 정기후원 제외)

추진기간	후원금품내용	지원세대	지원금(원)
2023.4.	식사 등	131	857,500
	현금	14	11,686,670
소계		145	12,544,170
2022	잡곡	50	1,177,000
	기타(라면 등)	619	5,967,290
	현금	57	40,322,450
소계		726	47,466,740
2021	선풍기	20	1,060,000
	기타(라면 등)	901	6,689,200
	현금	48	20,200,000
소계		969	27,949,200
2020	마스크	408	676,500
	기타(라면 등)	404	3,463,400
	현금	119	21,515,000
소계		931	25,654,900

○ 정기후원 현황 (2023.4.30. 현재)

후원자수	대상자수	월 후원금액	후원대상
5명	14명	1,400,000원	아동, 청소년, 저소득

○ 작성자 : 송병운(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8-3.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 지원 실적

□ 사업목표

- 국민기초수급자 중 갑작스런 질병·사고 등 위기사항 해소
-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지원으로 가정해체 방지

□ 사업개요

- 사업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3년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5,675,261

- 재산기준: 1억3천5백만원 이하
- 지원시기
 - 특별생계비: 연 1회 지원 원칙 / 체납액: 2년 1회 지원
 - ※ 최대 지원액 미만 지원시, 추후 차액 지원 불가
-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조기 발굴 및 선정 후 지원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
- 신청접수: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구청 생활보장과 지원결정
- 지원내용
 - 특별생계비 지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에 해당하는 금액
 - 체납액: 최대 50만원 한도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비 및 의료비	312,000	518,000	665,000	810,000	950,000	1,084,000	1,216,000
건강보험료·공공요금 체납액	건강보험료, 전기, 수도, 가스요금 / 최대 50만원 한도						

□ 추진실적

(단위:건,원)

추진기간	생계비 및 의료비		건강보험료·공공요금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4.	7	2,735,480	1	500,000
2022	12	4,104,210	2	334,200
2021	15	6,060,000	3	1,240,980
2020	40	15,023,000	10	2,066,050

○ 작성자 : 박주희(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중점확인사항

(한선미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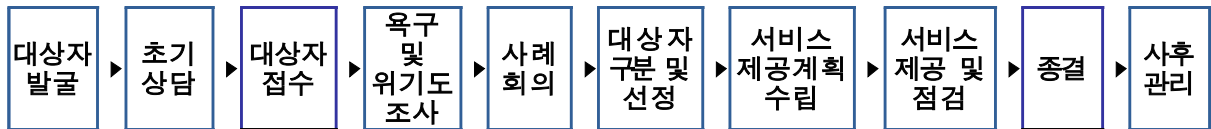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9-1. 사례관리 진행현황

■ 사례관리 추진개요

-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 지원대상: 복합적·지속적인 욕구를 가진 가구로서, 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 및 빈곤예방 지원이 가능한 가구
- 대상구분: 위기도 및 욕구조사 실시 후 사례회의를 거쳐 구분
 - 서비스연계 가구: 단편적 욕구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동사례관리 가구: 복합적 서비스 제공 및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구 통합사례관리 가구: 위기상황으로 구청 희망복지팀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
- 추진절차



- 사례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단위:명)

계	동주민센터	구	복지기관
17	9	2	6

■ 사례관리 추진실적

- 동 사례관리 추진실적

(단위:건)

추진기간	사례회의			사례관리			
	소계	내부회의	통합회의	소계	서비스연계	동 사례관리	구 통합사례관리
2023.4.	17	17	-	10	3	3	4
2022	40	36	4	36	16	14	6
2021	34	28	6	26	14	9	3
2020	36	33	3	21	10	7	4

- 동 사례사업비 집행실적

(단위:천원)

추진기간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	집행	예산	집행
2023.4.	3,938	975	5,200	-
2022	3,773	3,769	4,200	4,097
2021	3,773	3,684	4,000	3,914
2020	3,612	3,612	4,500	4,427

○ 작성자 : 이정화(사회7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9-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신청·접수 추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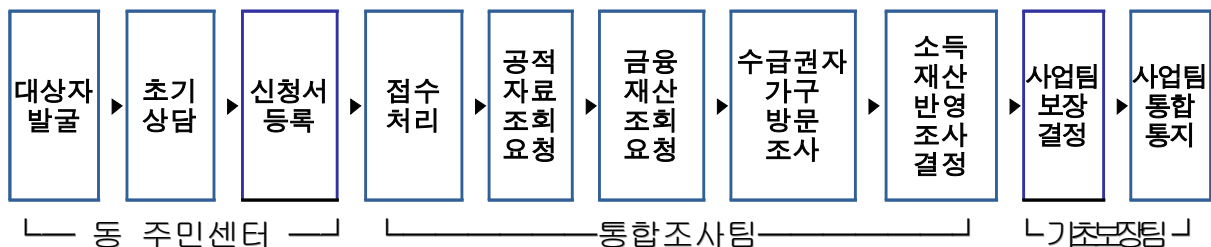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급여의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신청

-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소득·재산신고서, 주거관련서류,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업무 처리 절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책정현황

(단위:가구)

추진기간	신청	책정
2023.4.	107	34
2022	201	124
2021	299	212
2020	384	243

※ 차상위 및 한부모 신청의 경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

○ 작성자 : 박주희(사회8급) ○ 검토자 : 김주형(사회6급) ○ 확인자 : 나혜진(아현동장)

MAPQ